

강제견인 공시송달 공고

진도군 진도읍 관내 공영주차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사전예고통보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소유자 사망·소유자 미상·폐문부재·수취인불명·기타 사유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 고 명 : 무단방치차량 강제견인 공시송달 공고

2. 공고기간 : 2026년 8월 21일 ~ 2026년 8월 31일(10일간)

3. 차량번호 : 26로1047

3. 공시송달 내용

- 가. 소유자께서는 위 공고기간 내 해당 차량을 회수 또는 폐차 등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,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.
- 나. 또한, 견인 후 자진처리명령 절차 이행 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20~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- 다. 해당 명령에 불응하면 강제처리(폐차) 후 100 ~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,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방치 및 행위자로 검찰에 송치되어 같은 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5. 기타 문의 : 진도군청 안전생활지원과 교통행정팀(☎ 061-540-3496)

2026년 8월 21일

진도군수



강제견인 처리 대상 내역(1대)

연 번	차 량		소유자	차량 사진	방치장소
	차 명	차량번호	성명		
2	아우디 (A4 2.0 TFSI)	26로1047	DMITRIEV R○○○○N		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읍 성내길 25-34 공영주차장